

발행규정

2007년	4월	8일	제정
2007년	6월	23일	개정
2008년	6월	8일	개정
2009년	5월	30일	개정
2009년	7월	27일	개정

제1조(내용) 본 학술지는 운동학(운동학원론, 체력관리, 임상교육, 스포츠재활, 보건체육정책 등)에 관련된 독창성 있는 논문을 그 내용으로 하며,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임의로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일반기사(학회소식 등)와 광고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제2조(종류) 원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저(Original paper): 독창적인 연구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실험 연구, 조사 연구, 정책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총설(Review): 운동학(운동학원론, 체력관리, 임상교육, 스포츠재활, 보건체육정책 등)과 관련되는 제 분야의 총설을 게재한다.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한 어떤 특정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3. 증례 보고(Case study): 운동학(운동학원론, 체력관리, 임상교육, 스포츠재활, 보건체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새롭거나 흥미로운 소견을 보인 증례를 보고할 수 있다.

제3조(발행시기) 본 학술지는 매년 4회(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접수방법)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이메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마감) 논문 접수는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 게재호(권)의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발행방법) 본 학술지는 책자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체제) ① 학술지 표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본회명, 학술지명, 발행호수, 발행년월, ISSN 등을 명기한다.

② 학술지에는 학술 논문, 학회 규정(정관, 운영규정, 심사규정, 투고규정, 발행규정, 윤리규정 등)과 심사 경위, 최근 학회 활동 내역, 임원 명단, 편집위원 명단, 판권지 등을 수록할 수 있다.

③ 각 수록 논문의 체제는 논문 투고 규정의 체제를 따르되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1. 수록 논문 첫 쪽의 상단에 국문으로 서지사항(학술지명, 발행호수)을 밝히고, 둘째 쪽부터 짝수 쪽에는 논문명, 홀수 쪽에는 저자명을 밝힌다.
2. 수록 논문 끝 쪽에 논문투고일, 수정일(1차, 2차),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부칙[2007.04.08]

이 규정은 200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3]

이 규정은 200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08]

이 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30]

이 규정은 200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27]

이 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